부적합 사항 관리 대장 -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[발주처]

	발굴인	발부날짜	조치날짜	위치	부적합 발굴 경로		불합리 유형	부적합 내용	조치 前	조치 내용	조치 後	조치기한	위험성평가 반영 여부	비고
1월	N/A	26.06.15	26.06.17	P4-154kV A동 1F F06, B동 1F D19	N/A	현장 점검 시 발굴	들뜸	.1)부적합내용 : 배관자재 적재시 무게중심점 표기 미흡(대차의 무게중심점만 표기) .2)대책내용 : 대차에 자재 적재시 자재에 무게 중심점 표기 필요 .3)법적사항 : [산업안전보건법] 제38조(안전조치), 안전보건대장		조류 방지망을 이용한 출입 방지용 마감망 들뜸 하부고정을 통한 관리 조치		26.06.15 ~ 26.06.17	N/A	